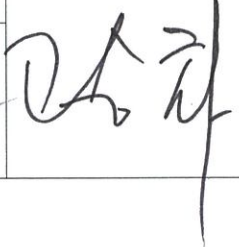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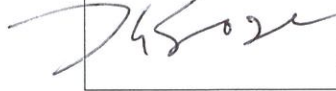


	회 장
사무처장	
	

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5. 10. 2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5. 10. 21.(화) 14:00 ~ 15:0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30명 중 17명 참석(감사 2인은 개의 정족수 제외)
 - 가. 참석(17명) : 고승화, 고관용, 문성은, 원석철, 강지영, 강희정, 고경희, 고창호, 김재경, 문상익, 박경숙, 양지혜, 양창오, 이규봉, 이주일, 임주리, 최은미
 - 나. 감사(2명) : 허철훈, 김석추

4. 개회 및 성원보고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의 성원보고 후 고승화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어느덧 추석도 지나고 올 한 해도 2달정도 남은 것 같다고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원석철 부회장 : 원안 동의하다.





- 이사 일동 재청, 삼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업무보고

- 의 장 :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에게 업무보고를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제주도민 복지박람회 추진개요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다.
- 의 장 :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의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다.

8.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및 상정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4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일 지정안, 제5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라고 하고, 이상 5가지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안건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 일동 5개 안건 채택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5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언하다.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추가경정 예산 관련 안건인 제1호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협의회 운영규정 관련 안건인 제2호, 제3호 의안과 제10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안건인 제4호, 제5호 의안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다.

나.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고성민 부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고관용 부회장 :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지정후원금 수입과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며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하다.

다. 부의안 처리

- 의 장 : 상정된 제1호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고관용 부회장의 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고성민 부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2호, 제3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2호 의안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계 원로가 돌아가실 경우 사회복지계에서 한마음으로 조의를 표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의 존경과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규정을 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며, 제3호 의안은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시설 증·개축으로 인한 대관 가능 시설을 변경하고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라고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원석철 부회장 :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번 사례가 발생하면 매번 이사회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는 것인지 묻다.

- 고성민 부장 :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규정이 이사회에서 제정 의결 되면 규정 운영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 이규봉 이사 :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중 제2조에서 장제를 ‘사회복지장’ 과 ‘협의회장’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장제를 꼭 2가지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장’ 하나로 하는 것이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 같다고 하다.
- 김성건 사무처장 : ‘사회복지장’ 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한 경우이고 ‘협의회장’ 은 사회복지협의회장 재임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문상익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고 하면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공헌도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임 중 사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장’ 이 아니라 ‘협의회’ 장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사회복지장’ 이 ‘협의회장’ 보다 상대적으로 좀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2조 장제의 구분을 ‘사회복지장’ 과 ‘협의회장’ 으로 구분하고 있는 원안을 ‘사회복지장’ 하나로 수정 처리하는데 동의하다
- 의 장 : 제2호 의안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이규봉 이사와





문상의 이사가 제2조 장제를 ‘사회복지장’ 과 ‘협의회장’ 으로 구분하고 있던 원안을 ‘사회복지장’ 하나로 하는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다른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2호 의안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제2조 장제를 ‘사회복지장’ 과 ‘협의회장’ 으로 구분하고 있던 원안을 ‘사회복지장’ 하나로 하는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제3호 의안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원석철 부회장 : 회관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금액이 직원들 주말과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 같지 않는데 좀더 사용료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무처의 의견을 묻다.

- 의 장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회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용료의 경제성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단체인 회원들이 이용 하는 것 인 만큼 높은 금액으로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사무처에서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사용료를 정하였다고 하다.





- 양지혜 이사 : 도내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사회복지협의회관과 복지이음마루 등이 저렴하게 시설을 대여해 주고 있어서 행사와 교육, 회의 등을 매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사용료가 너무 높아지면 현장에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원안대로 처리하여 진행하는것에 동의하다.

- 의 장 : 상정된 제3호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양지혜 이사의 동의가 있다며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바. 부의안 처리

- 의 장 :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장레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제2조 장제를 ‘사회복지장’ 과 ‘협의회장’ 으로 구분하고 있는 원안을 ‘사회복지장’ 하나로 수정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사.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4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일 지정안, 제5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일괄상정하다.

아.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고성민 부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우리 협의회 제9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가 2026년 1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기만료 1월 이전에 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고성민 부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9대 임원 임기가 2026년 1월 12일까지라서 2025년 12월 11일까지는 회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회 대·내외적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무처에서는 2025년 12월 5일 14:00를 제1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으로 제안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문성은 부회장 : 제10대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사무처에서 제시한 2025년 12월 5일 14:00로 하는것에 동의하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1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일을 2025년 12월 5일 14:00로 가결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규봉 이사 : 선거관리위원 선정을 사무처에 위임하는 것을 동의하다.





- 의 장 : 선거관리위원회 선정을 사무처에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에 위임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다.

자. 부의안 처리

- 의 장 : 상정된 안건인 제4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일 지정안은 2025년 12월 5일 14:00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5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에 위임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규봉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일동 폐회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00)






2025년 10월 21일

회 장 : 고 승 

부 회 장 : 고 관 


이 사 : 강 지 


고 창 


박 경 

이 규 

최 은 

감 사 : 허 철 

확 인 자 : 김 성 

기 록 : 이 현 

문 성 

강 희 

김 재 

양 지 

이 주 

김 석 

원 석 

고 경 

문 상 

양 창 

임 주 

